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609
----------	-------

발의연월일 : 2025. 7. 21.

발 의 자 : 최은석 · 유용원 · 김정재
구자근 · 김상훈 · 김기웅
이상휘 · 추경호 · 이인선
안철수 · 박수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의 경영권 관련 제도에 따르면 경영권 공격수단에 비해 경영권 방어수단이 현저히 적은 양상을 띠고 있고 이로 인해 경영권 경쟁수단의 균형성 확보에 대한 요청이 계속되어 옴.

이와 같은 불균형으로 인하여 여러 기업들이 외국계 투기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을 위협 받고 있어 해외로의 기술 유출 우려 등이 커지고 있고 불필요한 경영권 방어비용이 지출되는 등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인하여 감사위원회위원 선출과 관련한 3%룰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집중투표제의 의무화 및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개정 논의 역시 진행되고 있는 등 경영권 관련 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더욱 이와 같은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것임.

한편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인하여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이 주주에게까지 확대된 것인데, 이에 는 주주의 권리 보호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나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의 증가 및 배임죄 적용 대상 증가 등의 부작용 역시 우려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이사들이 회사 및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투자의 기회라고 하더라도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이를 기피하게 될 수 있고, 그와 같은 안전제일주의적 경영은 결국은 회사 및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인바, 판례로 인정되고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률에 명확화하는 등의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주인수선택권, 차등의결권 및 거부권부 주식을 도입함으로써 경영권 공격과 방어수단 사이의 균형을 이루어 공정한 경영권 경쟁을 보장하고,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여 이사의 경영활동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 31조 등).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7조제2항에 제3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5.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제330조 단서 중 “第417條”를 “第417條, 제432조의3제2항 및 제432조의7제2항”으로 한다.

제344조제1항 중 “상환”을 “의결권의 수, 거부권 여부, 상환”으로 한다.

제344조의3제1항 중 “없는 종류주식이나”를 “없거나 정관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 또는 내용이 다르거나”로, “사항과, 의결권행사”를 “사항, 의결권의 수 및 의결권행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제한되는”을 “제한되거나 의결권의 수가 다른”으로 한다.

제34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4조의4(특정한 사항의 거부권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요건 및 조건을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발행은 원시정관 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로 변경된 정관에 의하여야 한다.

제36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회사가 제344조에 따라 의결권의 수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2조의5(경영판단의 원칙)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의도가 없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회사 및 총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믿으며 경영상의 결정을 내렸을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하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편 제4장에 제4절의2(제432조의2부터 제432조의1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의2 신주인수선택권

제432조의2(신주인수선택권)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주 또는 제3자에게 그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주주인 경우에만한다) 미리 정한 가액(이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일정한 기간(이하 “행사기간”이라 한다) 내에 회사에 대하여 신주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하거나 제434조에 정한 주주총회 특별 결의로써만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상환에 따라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발행한도
3.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자기주식을 교부할 수 있다는 뜻

③ 회사는 그 가치를 유지 또는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의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주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을 무상으로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주의 일부에 대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뜻
3. 주주의 일부에 대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행사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뜻

4. 회사가 신주인수선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는 뜻

제432조의3(신주인수선택권의 부여) ① 회사가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이사회는 결의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주주 또는 제3자의 확정에 관한 사항
 2.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또는 이를 산정하는 방법
 3.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4.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및 행사조건
 5. 주주의 일부에 대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해당 주주의 범위
 6. 주주의 일부에 대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행사내용을 달리 정한 때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 및 해당 주주의 범위
- ② 회사는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제417조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가액을 신주인수선택권 부여일 또는 행사일 주식의 실질가액이나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정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이사회 결의일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 결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제4호의 행사기간 개시일은 제3항의 공고일부터 2주 후가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 ⑤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할 주식은 제1항제4호의 행사기간 내에는 그 발행을 보류하여야 한다.

제432조의4(신주인수선택권의 제3자배정과 무상배정) ① 제432조의3에

따라 제3자에게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432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신주인수선택권 부여일의 주식의 실질가액에 미달할 수 없다. 다만,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432조의3에 따라 신주인수선택권을 주주에게 무상으로 배정하는 때에는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주에게 무상으로 배정되는 신주인수선택권의 내용과 수 또는 그 산정방법
2. 배정의 효력발생일
3.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배정을 받는 주식의 종류
4.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및 행사가액

③ 주주는 제2항제2호의 효력발생일에 신주인수선택권을 가진다.

④ 회사는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기간 2주 전까지 주주에게 무상으로 배정된 신주인수선택권의 내용 및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32조의5(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① 신주인수선택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그 행사기간 내에 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하고, 이사회가 정한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장소에서 그 행사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신주인수선택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제516조의9제4항을 준용한다.

③ 회사가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의 대가로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신주인수선택권을 행사한 자는 행사일에 신주의 주주가 된다.

④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에 행사하여 교부받은 신주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신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의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일이 속하는 영업연도 말에 행사된 것으로 본다.

제432조의6(신주인수선택권의 양도 및 무상소각) ① 신주인수선택권은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신주인수선택권의 양도의 경우 이사회를 승인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양도 승인에 대해서는 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7까지를 준용한다.

③ 회사는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개시되기 전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로써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신주인수선택권 전부를 소각할 수 있다.

제432조의7(신주인수선택권의 상환) ① 회사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신주인수선택권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선택권을 상환하는 뜻과 그 사유
2. 상환할 신주인수선택권의 범위
3. 상환의 효력발생일

4. 상환의 대가로 교부할 신주 또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구체적인 내용

5. 상환에 관하여 주주의 일부를 다른 주주와 달리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 및 해당 주주의 범위

② 회사는 신주인수선택권의 상환으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417조에도 불구하고 그 발행가액을 상환의 효력발생일의 주식의 실질가액이나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호의 상환의 효력발생일은 제3항의 공고일로부터 2주 후가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상환하는 신주인수선택권은 상환의 효력발생일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⑥ 회사가 신주인수선택권의 상환 대가로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상환을 받는 자는 상환의 효력발생일에 신주의 주주가 된다.

⑦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에 상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⑧ 상환 대가로 교부된 주식의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상환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연도 말에 상환된 것으로 본다.

제432조의8(신주인수선택권의 등기) ① 회사는 제432조의3제1항의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신주인수선택권의 등기

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登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금액
3.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및 행사조건

③ 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32조의9(유지청구권)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 또는 상환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여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행위의 유지 또는 그로 인한 신주발행 유지를 청구할 수 있다.

제432조의10(준용규정) ①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상환으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429조부터 제432조까지를 준용한다.

②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상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의 수가 1주에 미달하는 단주인 경우에는 제443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631조제1항제3호 중 “第424條”를 “第424條 또는 제432조의9”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상업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신주인수선택권의 등기사항 등) ① 「상법」 제432조의2

제1항에 따라 주주에게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상법」 제432조의2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상법」 제432조의8에 따른 신주인수선택권의 부여 또는 변경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신주인수선택권의 부여 또는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상법」 제432조의10에 따른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상환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第317條(設立의 登記) ① (생략) ② 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 3의4. (생략) <u><신 설></u> 4. ~ 12. (생략) ③·④ (생략) 第330條(額面未達發行의 制限) 株式은 額面未達의 價額으로 發行하지 못한다. 그러나 第417條의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4조(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u>상환</u>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제한	第317條(設立의 登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3의4. (현행과 같음) <u>3의5.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u> 4. ~ 12.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第330條(額面未達發行의 制限) -- ----- -----, -----第417條, <u>제432조의3제2항 및 제432조의 7제2항</u>-----. 제344조(종류주식) ① ----- ----- ----- <u>의결권의 수, 거부권 여부, 상환</u>-----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제한

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
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
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
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
류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
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
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제
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
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신 설>

에 관한 종류주식) ① -----
-----없거나 정관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
또는 내용이 다르거나-----
-----사항,
의결권의 수 및 의결권행사---

-----.

② -----

-----.
-----제한되거나
의결권의 수가 다른-----

-----.

제344조의4(특정한 사항의 거부
권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
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거부
권을 행사하기 위한 종류주주
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종
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요건 및 조건을 정

第369條(議決權) ① 議決權은 1株
마다 1個로 한다. <단서 신설>

②・③ (생략)
<신설>

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발행은 원시정관 또는 제434조
에 따른 결의로 변경된 정관에
의하여야 한다.

第369條(議決權) ① -----
----- . 다만, 회사가
제344조에 따라 의결권의 수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
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382조의5(경영판단의 원칙) 이
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
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의도가 없이 상당한 주의를 다
하여 회사 및 총주주에게 최선
의 이익이 된다고 믿으며 경영
상의 결정을 내렸을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주에게 손해를 끼
쳤다고 하더라도 회사 또는 주
주에 대하여 의무를 위반한 것
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법
령에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신 설>

<신 설>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절의2 신주인수선택권

제432조의2(신주인수선택권)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주 또는 제3자에게 그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주주인 경우에 한한다) 미리 정한 가액(이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일정한 기간(이하 “행사기간”이라 한다) 내에 회사에 대하여 신주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하거나 제434조에 정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써만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신 설>

2.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상환에 따라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발행한도

3.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자기주
식을 교부할 수 있다는 뜻

③ 회사는 그 가치를 유지 또
는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의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주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
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을 무상
으로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주의 일부에 대하여 신주
인수선택권을 부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는 뜻

3. 주주의 일부에 대하여 신주
인수선택권의 행사를 허용하
지 아니하거나 행사내용을 달
리 정할 수 있다는 뜻

4. 회사가 신주인수선택권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
다는 뜻

제432조의3(신주인수선택권의 부
여) ① 회사가 신주인수선택권
을 부여하는 경우 이사회는 결

의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주주 또는 제3자의 확정에 관한 사항

2.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또는 이를 산정하는 방법

3.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4.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및 행사조건

5. 주주의 일부에 대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해당 주주의 범위

6. 주주의 일부에 대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행사내용을 달리 정한 때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 및 해당 주주의 범위

② 회사는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제417조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가액을 신주인수선택권 부여일 또는 행사일 주식의 실질가액이나 주식의

<신 설>

권면액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이사회 결
의일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
결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4호의 행사기간 개
시일은 제3항의 공고일부터 2
주 후가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⑤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할 주식은 제1항제4호의
행사기간 내에는 그 발행을 보
류하여야 한다.

제432조의4(신주인수선택권의 제
3자배정과 무상배정) ① 제432
조의3에 따라 제3자에게 신주
인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는 제432조의3제2항에도 불구
하고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가
액은 신주인수선택권 부여일의
주식의 실질가액에 미달할 수
없다. 다만, 제434조에 따른 주
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432조의3에 따라 신주인
수선택권을 주주에게 무상으로
배정하는 때에는 이사회는 다

<신 설>

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주에게 무상으로 배정되는
신주인수선택권의 내용과 수
또는 그 산정방법

2. 배정의 효력발생일

3.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배정을 받는 주식의
종류

4.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및 행사가액

③ 주주는 제2항제2호의 효력
발생일에 신주인수선택권을 가
진다.

④ 회사는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기간 2주 전까지 주주에게
무상으로 배정된 신주인수선택
권의 내용 및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32조의5(신주인수선택권의 행
사) ① 신주인수선택권을 행사
하려는 자는 그 행사기간 내에
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하고,
이사회가 정한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장소에서 그
행사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신 설>

한다.

② 신주인수선택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제516조의9제4항을 준용한다.

③ 회사가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의 대가로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신주인수선택권을 행사한 자는 행사일에 신주의 주주가 된다.

④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에 행사하여 교부받은 신주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신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의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일이 속하는 영업연도 말에 행사된 것으로 본다.

제432조의6(신주인수선택권의 양도 및 무상소각) ① 신주인수선택권은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신주인수선택권의 양도의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양도 승인에 대해서는 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7까지를 준용한다.

③ 회사는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개시되기 전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로써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신주인수선택권 전부를 소각할 수 있다.

제432조의7(신주인수선택권의 상

환) ① 회사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신주인수선택권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선택권을 상환하는 뜻과 그 사유

2. 상환할 신주인수선택권의 범위

3. 상환의 효력발생일

4. 상환의 대가로 교부할 신주 또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구체적인 내용

5. 상환에 관하여 주주의 일부를 다른 주주와 달리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 및 해당 주주의 범위

② 회사는 신주인수선택권의
상환으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제417조에도 불구하
고 그 발행가액을 상환의 효력
발생일의 주식의 실질가액이나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가
액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
항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
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호의 상환의 효력
발생일은 제3항의 공고일부터
2주 후가 되도록 정하여야 한
다.

⑤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상환
하는 신주인수선택권은 상환의
효력발생일에 그 효력을 상실
한다.

⑥ 회사가 신주인수선택권의
상환 대가로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상환을 받는 자는 상환의
효력발생일에 신주의 주주가
된다.

⑦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에
상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

<신 설>

<신 설>

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⑧ 상환 대가로 교부된 주식의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상환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연도 말에 상환된 것으로 본다.

제432조의8(신주인수선택권의 등 기) ① 회사는 제432조의3제1항의 이사회 결의일부터 2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신주인수선택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로 인 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가액

3.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및 행사조건

③ 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32조의9(유지 청구권) 회사가

<신 설> 第631條(權利行使妨害等에 關한 贈收賂罪) ① 다음의 事項에 關하여 不正한 請託을 받고 財産上의 利益을 收受, 要求 또는 約束한 者는 1年以下の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u>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 또는 상환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여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행위의 유지 또는 그로 인한 신주발행 유지를 청구할 수 있다.</u> 제432조의10(준용규정) ①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상환으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429조부터 제432조까지를 준용한다. ②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상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의 수가 1주에 미달하는 단주인 경우에는 제443조제1항을 준용한다. 第631條(權利行使妨害等에 關한 贈收賂罪) ① ----- ----- ----- -----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第402條 또는 第424條에 定 하는 權利의 行使	3. ----- <u>第424條</u> 또는 <u>제432조의9</u>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